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5월 30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된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, 공공주택 공급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 설치 기준 신설 (안 별표 2의 제5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5년 6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4
 - 전자메일 : jw3788@korea.kr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
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
-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.3대로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
[별표 2]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(제21조제1항 관련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4 510 1106 1147"> <thead> <tr> <th>시 설 물</th><th>설 치 기 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4. (생략)</td><td>○ (생략)</td></tr> <tr> <td>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</td><td>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 ○ <u>(단서 신설)</u></td></tr> <tr> <td>6. ~ 10. (생략)</td><td>○ (생략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물	설 치 기 준	1. ~ 4. (생략)	○ (생략)	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	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 ○ <u>(단서 신설)</u>	6. ~ 10. (생략)	○ (생략)	[별표 2]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(제21조제1항 관련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137 510 2069 1351"> <thead> <tr> <th>시 설 물</th><th>설 치 기 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~ 3. (현행과 같음)</td><td>○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tr> <td>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</td><td>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 ○ 「<u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</u>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.3대로 적용할 수 있다.</td></tr> <tr> <td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td><td>○ (현행과 같음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물	설 치 기 준	1. ~ 3. (현행과 같음)	○ (현행과 같음)	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	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 ○ 「 <u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</u> 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.3대로 적용할 수 있다.	6. ~ 10. (현행과 같음)	○ (현행과 같음)
시 설 물	설 치 기 준																
1. ~ 4. (생략)	○ (생략)																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	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 ○ <u>(단서 신설)</u>																
6. ~ 10. (생략)	○ (생략)																
시 설 물	설 치 기 준																
1. ~ 3. (현행과 같음)	○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오피스텔	○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, 세대·가구·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. ○ 「 <u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</u> 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.3대로 적용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
6. ~ 10. (현행과 같음)	○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